



2021년 9월 15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터넷·방송·통신은 9.15(수) 오전 11시 10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심의 결과에 따라 자료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.)

배포일시	2021. 9. 14.(화)	담당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
담당과장	이종석 과장(044-203-4540) 우성훈 팀장(044-203-4520)	담당자	- 신상훈 사무관(044-203-4523)

규제 샌드박스로 탄소중립 조기실현!

- 산업부, '21년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-
- 탄소중립 15건, 디지털전환 4건, 국민생활밀착 6건 등
실증특례 25건 승인 -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9.15(수), 10시, 포스트 타워(중구 소공로)에서 '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'를 개최하고
- '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', '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', '화장품 리필 매장 운영' 등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.

<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>

- 일시/장소 : '21.9.15(수) 10:00-11:10 / 포스트 타워 10층 대회의실
- 참석자 : 산업부 장관(위원장), 정부 당연직 위원, 민간위원, 관계부처 등
- 안건 : 실증특례 25건
 - ①-③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·운영(린데수소에너지 등3개社) 탄소중립
 - ④-⑥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(SK지오센트릭 등 3개社) 탄소중립
 - ⑦,⑧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 (알맹상점 등 2개社) 탄소중립
 - ⑨-⑭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(풀무원 녹즙 등 6개社) 국민생활밀착
 - ⑮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(현대차 등) 탄소중립
 - ⑯ 충방전 모사장치용 수소충전소 구축·운영(한국자동차연구원) 탄소중립
 - ⑰ 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(엠투파워) 탄소중립
 - ⑱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(신우유비코스) 탄소중립
 - ⑲ AI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시청효과 측정(사운드그래프) 디지털전환
 - ⑳ 공용 전기차 충전기용 외·내장형 OBC(바스맨테크놀러지) 탄소중립
 - ㉑-㉓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(마루디지털 등 3개社) 디지털전환
 - ㉔-㉕ 태양광발전·ESS 활용 전기차 충전(서울에너지공사 등 2개社) 탄소중립

□ 규제특례심의위를 주재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

○ “금번 특례위에서는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·운영,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,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 등 탄소중립 과제를 중심으로 25건을 심의하였다”고 말하며,

- “특히,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 구축을 위해 인천·울산·창원에 최소 1조원 이상 투자가 진행되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,

-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·정제공정에 본격적으로 투입할 시, '30년 90만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 될 것”이라고 기대하였다.

*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(만톤/년, 환경부) : ('20) 1.1 → (30) 90

- 또한, “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은 업계 추산으로 매장당 연간 110kg의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이 가능하며, 금번 승인이 화장품 리필 매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언급하였다.

○ 이어서, “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지만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숙제”라고 말하고,

○ “탄소중립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, 규제혁신이 중요하며,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조기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□ 산업부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과제 25건을 포함하여 총 169건의 과제를 승인하였으며, 올해에만 67건을 승인하여 제도시행 이후 규제특례 실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.('19년 39건, '20년 63건 승인)

* ('19) 총 39건, 실증특례 22건, 임시허가 5건, 적극행정 12건

(* '20) 총 63건, 실증특례 53건, 임시허가 8건, 적극행정 2건

(* '21) 총 67건, 실증특례 53건, 임시허가 13건, 적극행정 1건

□ 승인기업 중 8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(누적) 매출액 533억원, 투자금액 1,095억원을 달성하였고, 300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였다.

【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】

【안건1~3】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·운영 : 실증특례

“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·충전소 구축으로 수소경제 활성화!”

- (신청 내용) 린데수소에너지·효성하이드로젠, SK E&S·IGE, 하이창원은 액화수소 플랜트·충전소 구축·운영, 액화수소 운송 등을 위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하였다.

* (린데·효성) 30ton/day 생산, (SK·IGE) 90ton/day 생산, (하이창원) 5ton/day 생산

- 다만, 하이창원은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및 운송만 진행할 계획이다.



- (현행 규제)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설비, 수송트레일러 용기, 충전소의 기술·안전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.

- 따라서, 해외에서 액화수소 설비는 이미 상용화였지만, 국내에서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.

- (심의 결과) 규제특례심의위는 액화수소가 기체수소 대비 대기압 수준의 저압으로 저장·운송되므로 폭발 위험성이 낮으며, 적은 부피에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 등 액화수소의 장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.

- 다만,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부가 제시한 액화수소 플랜트·운송·충전소 안전기준 준수 등 조건부로 승인하였다.

- (기대 효과) 본 실증을 통해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 설비가 구축되어,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수소경제로 진입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또한, 플랜트 구축 등을 위해 울산·인천·창원에 최소 1조원 규모 이상의 투자가 진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[안건4~6)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: 실증특례

폐플라스틱이 휘발유,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탄생!

- (신청 내용) SK지오센트릭, GS칼텍스, 현대오일뱅크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·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하였다.
- 신청기업은 중소기업체 등으로부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구매한 뒤 이를 원유와 희석하여 석유화학·정제공정에 투입함으로써, 플라스틱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나프타, 휘발유·경유 등 연료유도 생산할 예정이다.



- (현행 규제) 석유사업법상 석유 또는 휘발유, 등유 등 탄화수소유만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화학·정제공정에 투입이 불가하다.
- 또한, 폐기물관리법상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석유화학·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 유형도 부재한 상황이다.
- (심의 결과) 규제특례심의위는 동 사업이 본격화되면 '30년 90만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.

*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(만톤/년, 환경부) : (20) 1.1 → (30) 90

- 다만, 폐플라스틱 열분해유가 투입된 최종제품의 검증을 위해 품질검사 등으로 품질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다.
- (기대 효과)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유용하게 재활용할 수 있어,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[안건7~8]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 운영 : 실증특례

“리필 판매장 확산으로 제로 웨이스트(100% 재활용) 실천!”

- (신청 내용) 알맹상점과 이니스프리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하였다.
 - 신청기업은 매장 내에 샴푸·린스·액체비누·바디클렌저 등 대용량 화장품 통을 설치하여 고객이 필요한 만큼 리필 용기에 직접 덜어서 구매하도록 하며,
 -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는 대신 화장품협회의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통해 고객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구매토록 도울 계획인 바, 리필 판매장 확산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.



- (현행 규제) 화장품법상 화장품 소분(리필 포함)판매 시 매장 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필수로 두어야 한다.
 - 그러나, 조제관리사 자격취득이 쉽지않고, 고용시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단순 리필 판매만 진행하는 소규모 매장에서는 조제관리사를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.
- (심의 결과) 규제특례심의위는 업계 추산으로 화장품 리필 매장당 연간 110kg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저감할 수 있으며, 친환경 소비문화가 확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.
 - 다만, 안전한 화장품 판매를 위해, 식약처가 제안한 품질·안전·위생 확보를 위한 직원교육, 위생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부가하였다.
- (기대 효과) 향후 화장품 리필 매장이 활성화되면,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지 사용이 줄어들어,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[안건9~14)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: 실증특례

“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을 함께 간편하게 섭취”

□ (신청 내용) 풀무원녹즙, CJ제일제당, 에치와이, 매일유업, 뉴트리원, 그린스토어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(이하 건기식)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하였다.

○ 신청기업들은 건기식과 일반식품을 하나의 제품에 담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일체형 제품을 소분·제조할 계획이다.

* (건기식 제조업소) 건기식 제조 → 벌크로 포장하여 식품제조업소로 이동 → (식품제조가공업소) 식품 제조 → (식품제조가공업소) 건기식과 식품을 소분·포장 → 판매



□ (현행 규제) 건강기능식품법상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는 건기식을 소분·제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,

○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건기식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하여 식품과 함께 소분하는 것이 불가하다.

□ (심의 결과) 규제특례심의위는 건기식을 일반식품과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이 증진되고, 관련 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.

○ 다만, 안전성·품질 확보 및 소비자 오인 방지 등을 위해 식약처의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·판매 지침을 준수할 것 등 조건부로 승인하였다.

□ (기대 효과) 소비자들은 건기식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일반식품과 함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[안건15]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 : 실증특례

“화물운송도 수소트럭으로!”

□ (신청 내용) 현대차, CJ대한통운, 현대글로벌비스는 10톤급의 수소전기트럭을 활용한 화물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.

○ CJ 대한통운과 현대글로벌비스는 현대차가 제작한 수소전기트럭을 각 2대씩 구매하여 화물운송*에 활용할 계획이다.

* (CJ 대한통운) 인천-곤지암, 인천-인천공항 (현대 글로벌비스) 울산-경주, 울산-양산



□ (현행 규제)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증차를 포함한 화물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금지되어 있어, 기존 보유트럭과 교체하지 않고서는 실제 화물운송을 통한 수소트럭의 시험·검증이 불가하다.

○ 그러나, 사전검증 없이 기존 보유트럭을 수소트럭으로 교체할 경우 운송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, 수소전기트럭의 화물 운송사업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.

□ (심의 결과) 규제특례심의위는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트럭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.

○ 다만, 증차허용을 통해 수소트럭의 보급을 확산하기보다 기존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트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,

- 증차허용 없이, 2년 동안 실증을 통해 검증한 후 수소전기트럭으로 교체해 나간다는 국토부의 조건*을 전제로 승인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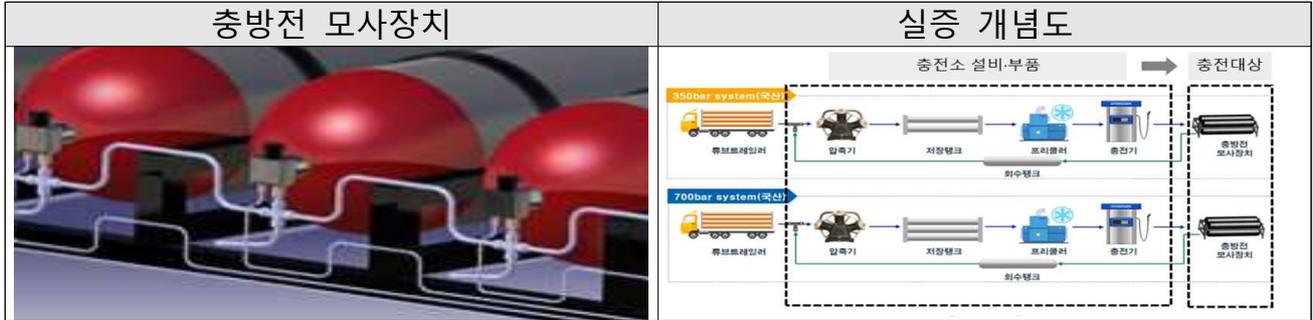
* 양도·양수 금지, 운송사업 경영위탁 금지, 실증사업에 한하여 사용 등

□ (기대 효과)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유 화물차가 수소전기 트럭으로 전환됨에 따라, 미세먼지 발생 저감·탄소중립 달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

[안건16] 충전 모사장치용 수소충전소 구축·운영 : 실증특례

“충방전 모사장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수소충전설비 개발!”

- (신청 내용)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수소충방전 모사장치의 충전을 위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.
 - * 충전 모사장치 2대(350bar, 700bar), 모사장치용 수소충전소 1기 구축 예정
- 수소충방전 모사장치는 수소버스 연료계통을 모방하여 제작하였으며, 간편하게 주요 설비·부품을 교체할 수 있다.
 - 따라서 주요 설비부품을 변경해가며 성능·내구성·신뢰도 등을 검증할 수 있어, 효과적인 수소충전설비 개발이 가능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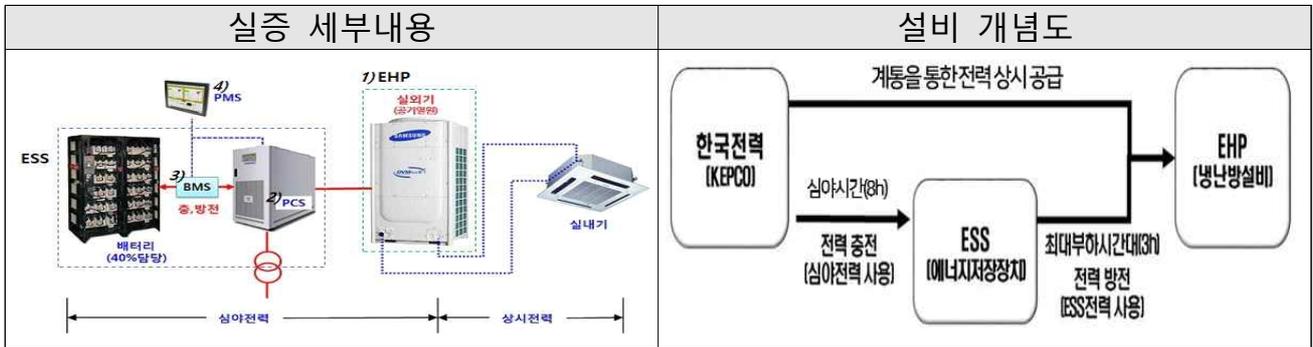


- (현행 규제)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 수소충전소는 실제 수소차만 충전할 수 있으며, 동 충전 모사장치는 충전이 불가하다.
- (심의 결과) 규제특례심의위는 충전 모사장치를 통해 개선된 수소버스용 수소충전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,
 - 현재 70% 수준인 수소전기버스 충전소재의 국산화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.
 - 다만,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준수, 자체안전성 평가 진행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전제로 하였다.
- (기대 효과) 국내 최초 부품 실증형 수소충전소가 구축됨에 따라, 향후 국산 수소충전 설비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[안건17] 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 : 실증특례

“전력피크, 축전식 냉난방설비가 해결합니다!”

- (신청 내용) 엠투파워는 ESS를 활용한 축전식 냉난방설비를 공공기관 등에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.
- 축전식 냉난방설비를 활용하여 심야시간에는 ESS에 전력을 저장하고, 피크시간에는 저장된 전력으로 전기히트펌프를 가동함으로써, 최대부하시간대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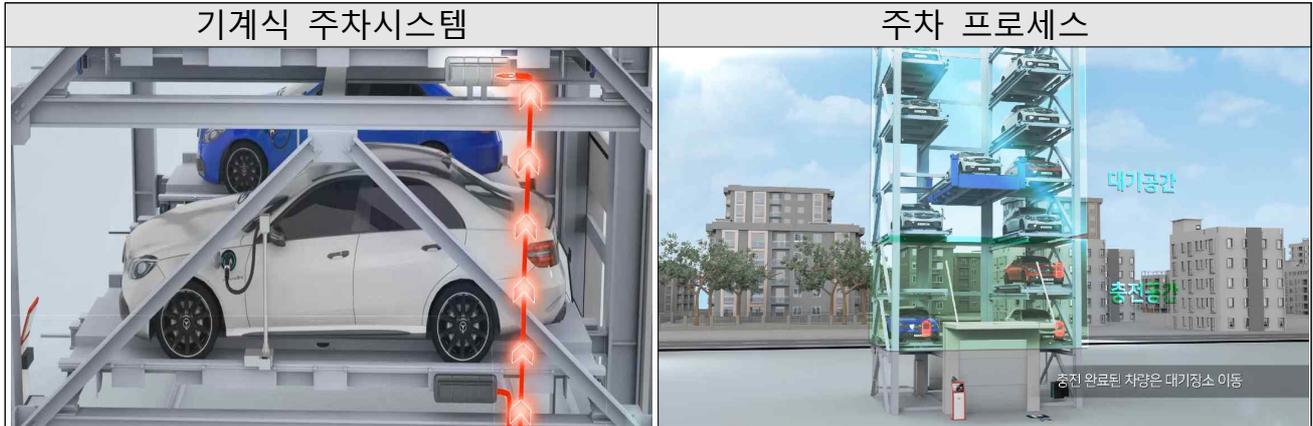


- (현행 규제)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상 축전식 냉난방설비는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, 사실상 판로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.
- 또한, 전기안전관리법상 리튬 배터리를 활용한 ESS 축전식 냉난방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부재하다.
- (심의 결과) 규제특례심의위는 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의 효과·안전성 등을 검증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.
- 다만, 시험기관을 통해 설비점검 실시, 옥외 전용공간에 ESS 설치·사용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하였다.
- (기대 효과) 심야시간에 저장된 전력을 냉난방 피크시간에 사용함으로써 전력피크 저감과 전기료 부담 완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.

[안건18]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 : 실증특례

“기계식 주차장에서 주차부터 전기차 충전까지 한번에!”

- (신청 내용) 신우유비코스는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.
- 신청기업은 기계식 주차장에서 주차와 전기자동차 충전 및 출고까지 자동으로 수행하는 주차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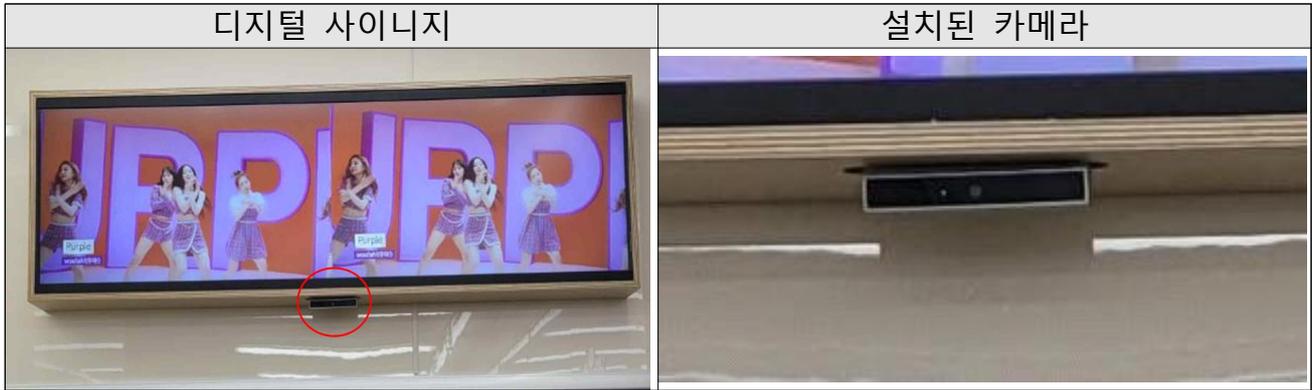


- (현행 규제) 주차장법상 기계식 주차장치에 적용되는 전기차 충전기 및 부속품의 안전기준 부재로 전기차 충전설비의 설치가 불가하다.
- 또한,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 연장을 위한 연장장치* 사용이 제한된다.
 - * 기계식 주차장의 특성상 전기차 충전을 위해 충전용 케이블 연장 필요
- (심의 결과) 규제특례심의위는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성이 증진되고 충전 인프라가 확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.
- 다만, 충전케이블 등 부품의 안전성을 시험·검증하고, 주차장 면적과 하중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등 산업부와 국토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하였다.
- (기대 효과)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기계식 주차장에도 충전기 보급이 가능해져, 충전 편의성이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.

[안건19] AI 활용 실시간 디지털사이니지 시청효과 측정 : 실증특례

사이니지 광고, 정확도는 높이고, 비용은 낮추고!

- (신청 내용) 사운드그래프는 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의 시청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.
 - 신청기업은 디지털 사이니지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얼굴방향, 눈동자 크기 등 비식별 안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함으로써, 시청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.



- (현행 규제) 개인정보보호법상, 비식별 안면데이터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, 광고 시청효과 분석을 위한 영상 정보처리기는 설치가 제한된다.
- (심의 결과) 규제특례심의위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광고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신기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.
 - 다만, 개인정보보호법 준수, 시청자가 촬영사실을 인지토록 촬영사실 고지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안한 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.
- (기대 효과) AI 기술 및 비식별 안면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고 광고 시청효과를 측정할 수 있어, 광고주가 광고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[안건20] 공용 전기차충전기용 외·내장형 OBC : 실증특례

“전동킥보드, 전기이륜차도 공용전기차 충전기로 충전하세요!”

- (신청 내용) 바스맨테크놀러지는 공용 전기차충전기용 외·내장형 OBC(On Board Charger) 운영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.
 - OBC란 공용 전기차충전기의 충전 소켓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(PM) 및 전기이륜차 등이 충전 가능한 소켓으로 변환해주는 장치이다.
 - 신청기업은 향후 제주도 내 전기차충전기에 OBC를 설치함으로써, PM과 전기이륜차도 전기차처럼 공용 전기차충전기를 통해 충전 가능하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다.



- (현행 규제) 친환경자동차법상 전기차, 하이브리드차 외에는 공용 전기차충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제한된다.
 - 또한,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외장형 OBC는 안전확인 대상이나, 적합한 안전기준이 없어 KC 인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.
- (심의 결과) 규제특례심의위는 급속히 증가 중인 PM, 전기이륜차의 충전 편의성이 증진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.
 - 다만, 기존 전기차의 충전공간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으므로,
 - 충전기 마다 별도의 전기이륜차 충전구역 확보, 전기차와 이륜차가 동시 충전이 가능토록 조치 등 산업부의 조건을 준수토록 하였다.
- (기대 효과) 외·내장형 OBC의 도입으로 인해 친환경 이동수단인 PM 및 전기이륜차가 확산되어 탄소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[안건 21~23]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: 실증특례

※ '20년 5차(20.12.23) 실증특례 승인안건(오픈그룹, 캐쉬플러스)과 동일유사안건

내 자동차로 광고해서, 부가수의 창출한다!

- (신청 내용) 마루디지털, 디자인하는사람들, 애드는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하였다.
- 신청기업은 앱을 통해 차량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와 개인차량 운전자 간 광고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- * 차량에 부착 가능한 스티커 등을 자기소유 자동차에 부착하여 광고

위치기반 앱 연동	차량 광고(트럭)	차량 광고(승용차)
		

- (현행 규제)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, 자기소유 자동차에는 타사 광고를 할 수 없으며, 차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.
- (심의 결과) 규제특례심의위는 기존에 유사한 과제가 승인되었고,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령정비 필요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하므로,
 - 既 승인기업과 동일한 조건*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.
 - * (운영규모) 1차년도 동시 운행대수 3천 대 → 최대 1만대까지 허용
(표시위치) 차량 본체 양 측면 및 후면(창문 제외), 각 면 면적의 1/2 이내 등
 - 다만, 향후 실증에 대한 성과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는 이번 승인기업을 포함해 기업별 최대 1만대(총 5만대)로 제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.
- (기대 효과) 소상공인 등이 자기소유 자동차를 이용하여 광고함으로써 부가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[안건24~25] 신재생에너지 및 ESS 활용 전기차 충전서비스 : 실증특례

※ '21.3.11일 실증특례 승인안건(이브리글로벌)과 유사안건

“남는 신재생에너지로 전기차 충전을!”

- (신청 내용) 서울에너지공사와 제주전기차서비스·LG에너지솔루션(권소사업)은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하였다.
- 신청기업은 소규모 태양광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ESS에 저장 후 한전의 송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차에 충전하는 솔라스테이션을 서울과 제주에서 운영할 계획이다.



- (현행 규제) 전기사업법상 자가용전기설비로 생산한 전력은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없고, 전기판매사업자(=한국전력)와 거래만 허용된다.
- (심의 결과) 규제특례심의위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소 보급이 활성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.
 - 다만, 기존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,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용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적용, 전기차 충전 목적으로만 충전·판매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하였다.
- (기대 효과) 전기차 충전기가 늘어남에 따라 가중되는 전력계통 부담이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충전기를 통해 분산·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